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8. 30. 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속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개정이유

이 조례는 조례명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을 “어린이집”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: 조례명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함

나. 조례명 변경에 따라, 제1조,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등”으로 함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
다. 제2조의 제목 “(정의)”를 “(적용범위)”로 변경하여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
라. 제6조의 사용료 면제 및 감액 사항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, “유치원 및 학교”를 “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”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명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 변경하고,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대상을 ‘어린이집’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의 의미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에 ‘어린이집’을 포함시킨 것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 제2항(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)에 비추어 볼 때 개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 인원이 증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시행 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제 해당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기관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